

2025 부산광역시 예산낭비신고 우수사례모음집

Busan
is good
부산이라 좋다



2025
부산광역시
예산낭비신고
우수사례모음집



Contents



chapter 01.

예산낭비신고의 이해

01. 예산낭비신고 제도란?	05
02.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06
03. 부산시 예산낭비신고제도 운영현황	06
04. 부산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예산똑띠) 구성 · 운영	07

chapter 02.

예산낭비신고방법

01.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속방법	09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접속	09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접속	10
★ 국민신문고 앱 접속	11
02. 예산낭비신고 작성방법(온라인)	12
1) 로그인 화면	12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12
3) 신청인 기본 정보 입력	13
4) 신청서 작성	14
5) 처리기관 선택	15
03. 예산낭비신고 작성방법(오프라인)	16

chapter 03.

예산낭비신고 우수사례

01. 행정안전부 배포 우수사례(우수사례 발췌)	18
02. 2025년 부산광역시 예산낭비신고 우수사례	21
03. 2025년 부산광역시 예산성과 우수사례	32

chapter 04.

참고자료

01. 예산낭비 신고 관련 서식	46
02. 관련법령	51

chapter 01. 예산낭비신고의 이해

01. 예산낭비신고 제도란?
02.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03. 부산시 예산낭비신고제도 운영현황
04. 부산광역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예산똑띠) 구성 · 운영



chapter

01.

예산낭비신고의 이해



01. 예산낭비신고 제도란?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예산낭비 사례 및 예산절감 방법 등을 시민들이 직접 신고하는 제도
예산 분야에서의 주민참여 확대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지방행정 구현

Busan
is good
부산이 좋다

예산낭비신고 집중신고



QR코드 스캔해서
예산낭비 신고하자!



예산낭비신고란?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한 예산낭비 사례 및 예산절감 방법 등을 시민들이 직접 신고하는 제도

운영기간	연중 상시
신고내용	· 부산광역시 예산낭비 사례 · 예산절감 제안 · 수입증대 방안
신고방법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앱 www.epeople.go.kr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www.busan.go.kr/yesan 주민참여예산 · 예산낭비신고 · 팩스 051-888-2059
처리과정	 예산낭비신고 접수  신고사항검토 및 처리  검토결과 통보  타당함 신고의 경우 신고보상금 지급 및 사후관리 추진
문의처	부산광역시 예산담당관 051-888-1267

타당한 신고의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신고보상금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연 1회)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02.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 ▶ **운영근거**: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2
- ▶ **운영목적**: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언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
- ▶ **운영기간**: 연중상시
- ▶ **신고대상**: 예산낭비사례, 보조금 부정수급, 예산절감 방안 및 수입 증대 방안 제언 등
- ▶ **신고방법**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내 예산낭비신고 또는 팩스(051-888-2059)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앱



03. 부산시 예산낭비신고제도 운영현황

연도	예산액	신고건수*	인센티브 지급결과		
			합 계	격려금	사례금
2025	2,000천원	26건	10건 570천원	3건 300천원	7건 270천원
2024		26건	10건 440천원	2건 200천원	8건 240천원
2023		24건	10건 410천원	1건 100천원	9건 310천원

* 신고건수: 접수 건 중 취하, 일반민원 전환, 중복, 이관 등 제외 건수



04. 부산광역시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 (예산똑띠) 구성·운영

- ▶ **운영근거**: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 ▶ **성 격**: 무보수, 명예직
- ▶ **운영목적**: 예산집행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교육에 따른 양질의 예산낭비신고로 체계확립을 위해 운영
- ▶ **구성현황**: 제4기 예산똑띠 25명(공개모집)
 - 성 별: 여성 12명, 남성 13명(여 48%, 남 52%)
 - 연령별: 34세 이하 3명, 35세~50대 13명, 60대 이상 9명
 - 구군별 현황

계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
25	1	3	0	1	3	3	1	2	2	1	3	1	2	2	0	0

- ▶ **임 기**: 2년(1회에 한해 연임가능) ※ 1년 후 활동실적 없는 단원 해촉
- ▶ **주요활동**
 - 예산낭비신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감시
 - 예산낭비 및 절감제안과 관련된 현장확인
 -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 예산낭비신고제도 홍보 서포터즈 활동 등
- ▶ **인센티브**: 예산낭비신고 실적에 따른 유공자 표창 및 신고보상금 지급
- ▶ **예산똑띠 역할**
 -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절감제안
 - 자유토론을 통한 국민신문고 및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제안
 - 예산낭비신고 관련현장 확인
 - 신고가 접수된 예산낭비사례 현장 확인 후 관련 보고서 제출
 -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
 -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집행현황, 내용 확인하고 낭비요소 등 점검
 - 예산낭비신고제도 홍보 서포터즈
 - 제도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으로 서포터즈 활동 수행

chapter 02. 예산낭비신고 방법

01.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속방법

-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접속(www.busan.go.kr/yesan)
-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접속(<http://www.epeople.go.kr>)
- ★ 국민신문고 앱 접속

02. 예산낭비신고 작성방법 (온라인)

- 1) 로그인
-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 3) 신청인 기본 정보 입력
- 4) 신청서 작성
- 5) 처리기관 선택

03. 예산낭비신고 작성방법 (오프라인)

chapter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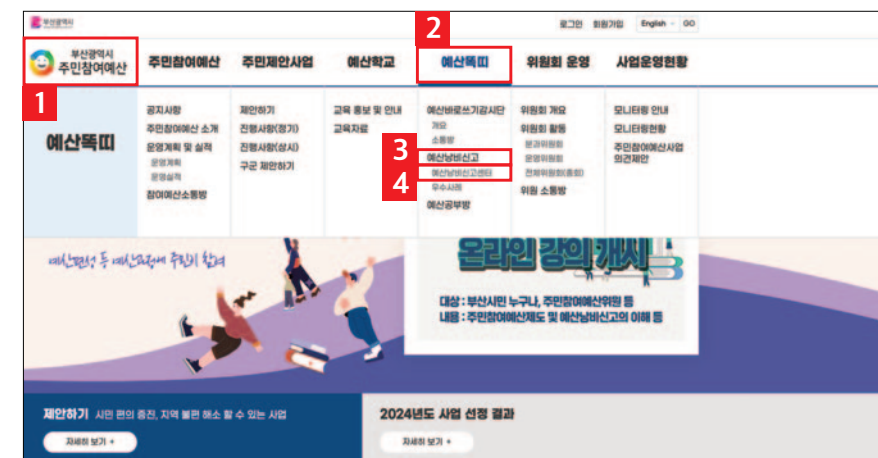
예산낭비신고 방법



01.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속방법

★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접속 (www.busan.go.kr/yesan)

- 1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메뉴 » 2 예산쪽띠 » 3 예산낭비신고 » 4 예산낭비신고센터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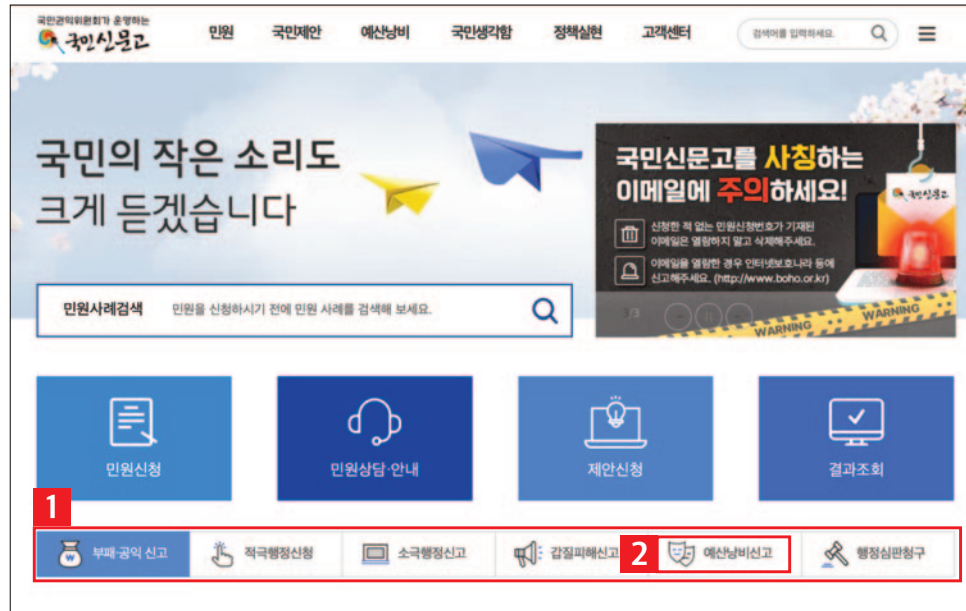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 1 예산쪽띠(감시단신고) 배너 클릭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접속 (<http://www.epeople.go.kr>)

- 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중앙 >> ② 예산낭비신고 클릭



- 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 ② 메뉴창 ≡ >> ③ 예산낭비 신고 혹은 예산절감 제안 클릭



★ 국민신문고 앱 접속

- ① play 스토어 혹은 App Store에서 국민신문고 앱 다운로드 >> ② 국민신문고 앱 실행



- ③ 국민신문고 어플 메인화면 하단 예산낭비신고 버튼 클릭





02. 예산낭비신고 작성방법 (온라인)

1 로그인

로그인

국민신문고 통합로그인 화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의 더 많은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및 비회원 실명확인 정보는 120분 동안 유지되며, 자리를 비우실 때는 보안을 위해 반드시 로그아웃 하거나 사생활을 지키기 위한 모든 인터넷 창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회원 로그인

국민신문고 또는 국민생각함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아이디가 휴대전화번호인 경우, 기호를 포함하여 입력
아이디(8~12자의 영문 대 소문자, 숫자, ., _)

아이디

비밀번호

☐ 비밀번호보이기

로그인

회원 로그인 국민신문고 회원가입 후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간편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디지털일패스

무비밀신분증

금융인증서

아이핀

공무원 인증

비회원 로그인 간편인증을 통한 비회원 로그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신청서 작성 **2 기관선택** **3 신청완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예산낭비신고 처리	10년

※ 자동수집항목 : IP(Internet Protocol)주소, 이용내역의 기록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예산낭비신고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미동의 ☒ 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선택)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 기간
휴대전화, 전자우편	진행 상황·답변 통지 알림	10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선택항목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예산낭비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행 상황·답변 통지 알림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미동의 ☐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선택)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한국전력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예산낭비신고 처리	성명,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전자우편	10년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제공항목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예산낭비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기관의 소관업무가 아닐 경우 이송/이첩되지 않고 종결"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3자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미동의 ☐ 동의

가급적 동의 (동의 포함)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필수동의

- 예산낭비신고 처리를 위한 필수 수집 항목(성명, 주소, 연락처) 동의여부 확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선택적 동의

- 집행 상황, 답변 통지 알림을 위한 휴대전화, 전자우편 동의여부 확인

③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선택(가급적 동의)

-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예산낭비신고가 가능하나,

"해당기관의 소관업무가 아닐 경우 이송/이첩되지 않고 종결"될 수 있음

3 신청인 기본 정보 입력

신청인 기본 정보 * 표시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신청인

신청인 구분 * ☒ 개인 ☐ 단체

연락처 * 선택 - -

※ 다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주소찾기

※ 주소찾기를 통해 자동 입력됩니다.

※ 상세 주소를 직접 입력해주세요.

진행상황 통지방식 ☒ 누리집(홈페이지)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휴대전화 선택 시 가가옴으로 진행상황이 통지(09시~18시) 됩니다.
※ 카카오톡 계정이 없거나 국민신문고 채널을 차단한 경우 문자로 발송됩니다.
※ 알림 수신 당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문자와 카카오톡 모두 발송될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 통지방식 ☒ 누리집(홈페이지) ☐ 전자우편 ☐ 서면 (모바일, 전자문서, 종이우편)

민원확인 보안설정 ☐ 설정

※선택할 경우 회원은 비밀번호 재입력, 비회원은 신청번호를 입력 후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 다음

① * 표시 필수 입력 사항으로 정확히 입력

② 진행사항 통지방식 : 홈페이지, 전자우편(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선택 가능

③ 처리결과 통지방식 : 홈페이지, 전자우편(이메일), 서면 중 선택 가능

④ 민원확인 보안설정 : 설정 시 회원은 비밀번호 재입력, 비회원은 신청번호 입력 후 답변 확인가능



4 신청서 작성

① 신고내용 입력

- 신고제목 : 신고내용을 드러낼 수 있는 제목
- 신고내용 : 일시·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첨부파일 : 신고내용과 관련된 사진, 보충자료 등 첨부 가능

② 다음 버튼 클릭



5 처리기관 선택

①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선택 →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혹은 해당 구 선택

② 신청 버튼 클릭



03. 예산낭비신고 작성방법 (오프라인)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명 칭)

주 소

연 락 처

전 화

이 동 전 화

전 자 메 일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기관명

신 청 구 분
☐ 예산낭비신고 ☐ 예산절감제안

답 변 방 법
☐ 우편 ☐ 전자메일 ☐ SMS

신고 등 내용

※ 육하원칙에 따른 구체적 내용 기입

20 . . .

신청자

인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 작성 후 팩스(051-888-2059),
우편(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11층 예산담당관 예산낭비신고센터 담당자) 제출

chapter 03.
예산낭비신고 우수사례

- 01. 행정안전부 배포 우수사례
- 02. 2025년 부산광역시 예산낭비신고 우수사례
- 03. 2025년 부산광역시 예산성과 우수사례





01. 행정안전부 배포 우수사례

※ 2023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지방예산낭비신고 매뉴얼 발제

1. OO신도시 산책로 부실공사

예산낭비 신고내용	· OO신도시 산책로 부실공사로 인하여 준공 4개월 뒤 강우로 도로포장이 파손되고 토시가 유출되었으며, 보행자 안전 펜스가 기울어지는 등 안전상의 문제 발생이 우려됨
담당부서 처리결과	· 산책로 주변 OO아파트 공사부지 내 침사지 배수펌프 고장으로 인해 우수가 매천으로 범람하여 하천 사면이 유실되고 펜스가 기울어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 해당 시설 관리기관에서는 '22. 3. 16. 하천사면과 안전펜스를 복구하였으며, 지반 안정화 이후 도로포장을 진행하여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2. 수목식재 후 관리부실로 인한 예산낭비

예산낭비 신고내용	· OO시 OO아파트 옆 하천변 부지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 꽃밭을 조성하였는데, 사후 관리소홀로 인해 수백 그루의 연산홍이 고사되거나 고사 진행중임. · 당시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마을 이장님, 봉사단체 등을 동원하여 힘들게 조성한 꽃밭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예산낭비가 발생
담당부서 처리결과	· 해당 사업은 마을 미관 개선과 쓰레기 불법투기 및 무단 경작 예방 목적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확인됨 · 현장점검 및 부서의견을 종합한 결과, 사업이 완료된 이후 봄철 가뭄대처 등 관리부서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함 · 이에 따라 지자체 전 부서에 “전시성 사업 지양, 사후관리 방안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후관리 철저” 등을 지도하고, 유사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전파



3. 포상장 납품지연에 따른 사업부서 개별구매 예산낭비

예산낭비 신고내용	· 포상장 납품 기한이 연장되어 사업부서에서 포상장을 개별로 구매하여 예산을 낭비함
담당부서 처리결과	· 해당 제품의 디자인 변경으로 납품 전량을 재제작함에 따라 납품기한이 연장되었고, 사업부서에서 개별 구매한 것을 확인 · 포상장 제작 시 수요를 감안하여 총무과에서 일괄 제작하고 있어 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개별 구매하여 예산이 낭비됨 · 행정안전부에서는 제품 구매 시 납품 전철저한 검수와 총무과에서 사전 구매한 물품을 사용하는 등 자체개선 노력을 당부함

4. OO협회 지부 보조금 부정집행 예산낭비

예산낭비 신고내용	· OO협회 지부 가 2021년도 교부금(도비, 군비)을 부정하게 집행하였음
담당부서 처리결과	· OO도청과 OO군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22. 5. 11.) 결과 행사 홍보물품 중복 지출 및 단체 직원에게 강사비 부정 집행을 확인하여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음

5. 비영리 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적정 사용

예산낭비 신고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사용됨
담당부서 처리결과	· 현장 조사 결과 지침상 기재된 단가 초과 사용을 확인하였으며, 허용되지 않은 참가비와 후원금을 수취한 것을 확인함 · 또한, 당초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추진한 것을 확인 · 참가비 및 후원금은 참여자들에게 반환조치 하였으며, 지침상 숙박비와 식비 단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보조금 5,212천원을 환수조치함



6. OO군 건축물 관리소홀 및 방치 예산낭비

예산낭비 신고내용	· OO군에서 설립한 귀농귀촌자 임시거주 공간을 5년간 관리소홀 및 별도 관리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방치되어 설립취지가 변질되고 예산이 낭비됨
담당부서 처리결과	· 당초 설립한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 운영방안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해당 시설에 대한 위탁협약 추진 예정임

7.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조명 전력낭비

예산낭비 신고내용	· OO군 생활체육공원 내 위치한 축구장 서치라이트가 새벽에도 점등되고 있어 예산낭비가 우려됨
담당부서 처리결과	· 자동 점소등 타이머 설정 및 서치함 자물쇠 변경으로 임의적으로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음 · 또한 전력낭비 신고 현수막을 게첨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함

8. 시설물 관리 철저 요청

예산낭비 신고내용	· OO에는 원통형 가로등과 안전바가 설치되어있음 · 원통형 가로등은 불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 많고, 안전바에는 거미줄과 벌레, 먼지가 쌓여 지저분함 · 시설물 방치로 인하여 예산낭비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부탁함
담당부서 처리결과	· 현장 확인을 통하여 '22. 7. 22. 노후 램프를 교체하였으며,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변시설 정비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음

9. 무인단속카메라, 방범용 CCTV 등의 철주 공동사용 건의

예산낭비 신고내용	·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기존 금속기둥(철주)에 무인단속카메라, 방범용 CCTV 등 카메라와 합체를 추가 설치(철주 공동 사용을 통해 예산 절감 가능)
담당부서 처리결과	·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 사업 시 두꺼운 철주(250a 이상)를 설치할 예정으로 타 기능 장비의 철주 공동 사용을 적극 협조 및 안내함

02. 2025년 부산광역시 예산낭비신고 우수사례 ※ 작성자 동의 예산낭비신고 우수사례건 게시

1. 불필요한 BRT공사로 인해 모두가 교통받을 수 있습니다.(2024. 2.)

예산낭비 신고내용	· 1월말경 부산의 BRT최종보고회가 있었죠. 강서구의 불필요한 BRT공사로 인해, 차량운전자와/버스이용자/거주민 또한 비용까지 낭비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하단 ~ 녹산은 출퇴근시 굉장한 교통체증이 있는 구간입니다. 잘 알고있기 때문에 BRT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지만 해당구간의 차량 이용자는 상당수가 남성이고 BRT가 신설된다 하더라도 버스이용자들은 거의 없을걸로 생각합니다. 해당구간은 BRT가 아니라, 지하철만 진행되면 됩니다. 하단녹산선이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도, 지하철 공사만 준공되면 해당구간의 교통체증도 해소될겁니다. 왜 굳이 안해도 되는공사를 해서 이중으로 교통난을 야기하나요? 하단녹산선만 제대로 만들어줘도, BRT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해당구간을 버스로도 다니고, 자차로도 다니는 사람입니다. 절대 필요없는 공사고, 해당공사가 시작되면 안그래도 지옥같은 출퇴근시간에 더 교통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정작 BRT가 필요한 구간은 강서선 라인입니다. 강서구를 세로로 다니는 구간에서, BRT가 필요합니다. 하단녹산선처럼 횡으로 가로지르는 도로는 하단녹산선 지하철이면 충분합니다. 강서구를 세로로 가르는 강서선 라인이 이번 조사에서도 후순위로 미려났기 때문에 해당구간에 BRT를 만들어주시면, 하단녹산선과 시너지 효과가 날거예요. 제발 이전 계획을 다시 생각해주시시오. 예산낭비와, 시간낭비, 그 동안의 이용자들의 피로감을 올릴뿐인 공사입니다. 하단녹산선만 빠르게 착공되고, 강서선 예정라인에 BRT만 만들어주신다면 강서구의 열악한 출퇴근 교통에 대해선 어느정도 해소될 거라 생각합니다.
담당부서 처리결과	· [버스운영과 답변] 가.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사업은 기존 교통정책의 패러다임 중심을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나. 승용차 증가속도에 맞춘 도로건설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도심지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에 대한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굳이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대중교통만으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현재 4개축(동래~해운대, 동래~서면, 서면~충무, 서면~사상) 30.3km를 운영중에 있으며 버스속도 및 정시성 개선 등 버스 서비스를 향상시켜 버스이용객의 증가와 함께 도심지 교통을 균형적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 또한 하단~녹산 구간의 BRT 계획과 관련하여서는 "BRT 국가종합 계획"상에 '하단~진해 BRT' 노선이 반영되어 있으며 부산과 경남권역 (창원시)을 연결하는 광역 BRT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 귀하께서 제기하신 해당 구간의 도시철도 '하단~녹산선'과의 일부 중복구간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서, 현재 강서지역 BRT는 구체적인 사업시행 및 추진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추후 도시철도 사업과의 중복공사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계획 등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검토하고 협의·조율하여 더 효율적이며 편리하게 대중교통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산시 도로교통과(2024. 2.)

예산낭비
신고내용

- 부산시는 지난 17일 오후 2시 강서구청 구민홀에서 서부산권 교통수요 대응을 위한 엄궁·장낙대교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과 강서구 시의원, 구의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나, 환경단체는 불참. 불참한 이유는 장낙대교의 문화재구역 내 노선 승인을 위해 2023년 9월 문화재청에 문화재현상변경 협의를 진행했으나, 지난 1월 24일 환경단체 협의 경과 보완 등을 이유로 심의에서 부결이 이유겠조
- 부산시는 주민설명회 이전에 문화재현상변경 심의가 부결돼 착공과 준공 일정이 또다시 지연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해당 설명회를 위해 참석한 시민들은 소중한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언론에 밝혀진 최소 참석인원만 100명이니 한시간이면 100시간, 한시간 반이면 150시간이 소모가 되었으며, 부산시 예산도 다소 사용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엄궁·장낙대교 추진에는 7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수백억의 세금이 투입되었음에도 아직 삽도 뜨지 않았습니다.
- 부산시의 환경단체와의 커넥션이 있는지 감사 부탁드립니다, 부산시에서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게 하며 세금 낭비를 감시 할수있도록 거버넌스 체계 도입의 일환으로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참여된 시와 지역주민, 환경단체로 구성된 민관 관리협의체를 구성바랍니다.

담당부서
처리결과

- [도로계획과 답변]
가. 장낙대교 건설사업은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 북측진입도로이며, 현재 개발중인 에코델타 시티 교통량 처리뿐 아니라, 창원에서 부산을 연결하는 광역도로의 기능 및 서부산과 북항을 연결하는 부산시 동서3 축에 포함된 노선으로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23. 9월)하고 문화재청과 문화재현상변경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나. 지난 2/17 강서구청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사업추진 관련 배포문에 담긴 장낙대교 착공일('24. 9월)은 현재 추진중인 문화재현상변경 심의(월 1회 개최)를 조속히 완료하는 목표로 계획한 착공예정일임을 알려드립니다. 확정되지 않은 예정 착공일을 명시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 다. 엄궁, 장낙대교 건설은 사업착수후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집행된 예산은 설계비(엄궁 59.4억원, 장낙 36억원)로서 설계 완료후 착공되면 본격적 예산 투입예정입니다.
- 라. 우리시는 낙동강하구 전체를 대상으로 개발사업 및 횡단교량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저감 및 관리방안 수립을 검토 예정으로, 민관거버넌스 활성화 계획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예정임을 알리며, 현재 추진중인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조속한 시일내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부산시 영도구 슬레이트 지원사업(2024. 4.)

예산낭비
신고내용

- 안녕하세요.
부산시가 지역 대표 관광지인 OO구 흰여울 OO마을에 '석면 시한폭탄'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 방치(국제신문 지난 1월 12일자 2면 보도 등)됐다는 본지 지적에 따라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뉴스기사에서 봤는데요...
- 실제로
상호 : 000 (OO)
주소 : 부산광역시 OO구 0000 00 (부산광역시 OO구 00동00 000)
- 여기 건물주인 (OO) 00영업 (O)이 하는데
건물사서 슬레이트 지붕 제거하면 지원금 준다고 한거 받아서
슬레이트 지붕 제거 안하고
그 돈으로 그 위에 데크 깔아서 더 높은 불법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역이용해서 본인들의 개인적인 이득에 쓰다니요.....
(더군다나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거의 2층 높이로 지었습니다)
이 무슨....황당한 경우입니까.
- 바쁘시겠지만 부디 확인해보시고 처리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처리결과

- [탄소중립정책과 답변]
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보조금 적정 사용 여부 관련 (OO구 환경위생과 확인)
- OO구(환경위생과)에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슬레이트 지붕 철거 비용을 공사업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 이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작업 수행 및 정산자료 보고서를 재확인하고 현장 방문하여 슬레이트 지붕 철거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 위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업무 처리 지침(환경부)」에 따라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자를 통해 공사가 진행되며, 공사 완료 후 공사업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 하므로 사업 신청자가 공사업자를 선정하여 공사진행 및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불가함.
- 나. 무허가건축물 불법 증축 관련 (OO구 건축과 확인)
-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지붕틀 대수선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영도구(건축과)에서 기 시정명령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진우도 수상워크웨이 예산낭비(2024. 4.)

예산낭비 신고내용	·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 신호동 - 진우도 - 가덕도까지 이어지는 길이 2.6km 도로인데, 목적은 “보행도로”로 설치한다고 하나 오션시티 - 신호동은 이미 보행할 수 있는 다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관광지도 아니고 어정쩡한 이런 도로 개발은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검토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처리결과	· [관광자원개발과 답변] 가. 우리 시에서는 동·서부산 균형발전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낙동강, 가덕도 등 천혜의 자연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서부산 지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 부산 수상워크웨이는 우선 강서구 명지오션시티 ~ 신호동 길이 1.0km 구간에 대하여 해상 보도교로 조성할 계획이며, 진우도 ~ 가덕도 구간은 가덕신공항과 공항배후도시 건설 방향에 따라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 수상워크웨이 건설로 남해안과 부산의 해변길, 숲길, 마을길을 잇는 남파랑길과 갈맷길을 연결하여 낙동강 하구의 천혜의 자연경관을 경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 소재 관할구청 및 공공기관에서 관급자재(철근) 조달 구매시 업체별 단가 및 계약 조건을 고려하여 구매 요청의 건(2024. 7.)

예산낭비 신고내용	· 최근 부산시광역시 소재 관할구청 및 공공기관에서 진행한 공사 현장에 대한 관급자재 철근 조달구매시 부산지역은 공장상차도 계약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단가가 낮은 공장상차도 계약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해오던 관행처럼 공장상차도 계약에 비해 단가가 더 높은 하치장상차도 계약으로 진행을 하여 예산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 관급자재 철근의 경우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은 거의 동일한 품질이며 동일한 납품기한이므로 특별한 사유없이 최저 단가로 구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관급자재 철근은 다른 자재에 비해 단가의 차이도 크고 금액도 크므로 반드시 조달구매 전에 공장상차도, 하치장상차도 조건을 확인하고 구매하여야 합니다. 상차도계약에 따른 운반비는 공장상차도와 하치장상차도의 금액을 비교하였을때 부산시내 지역의 현장임을 감안하면 동일하므로 운반비 때문에 하치장상차도 계약을 진행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부산시에서 개설되는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관급자재 철근 조달구매시 조달청 나라장터의 첨부파일인 업체별 단가표를 검토하여 공장상차도 계약으로 진행하여야 하치장상차도 계약보다 철근 구매 예산이 작게는 수십만원에서 크게는 수천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공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예산 계획부터 반영하는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 조달청 나라장터 첨부파일 업체별 단가표 등 2개
담당부서 처리결과	· [기술심사과 답변] 가. 현재 조달청 계약업체 중 부산공장 보유업체가 2개 사 있으며 부산지역 내 생산공장 상차도 구매가 가능하나, 나. 단가 및 인도조건 외 운반거리·수량·자재수급 현황 등 현장 여건을 종합검토하여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직원 업무회의 및 직무교육 시 관련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6. 1,500억원 혈세낭비가 우려되는 부산 대학원대학 설립 계획 중단 촉구를 위한 예산낭비신고(2024. 8.)

(부산형 대학원대학 설립 계획에 대한 예산낭비신고서)

제목 : 부산형 대학원대학 설립 계획의 위법성과 부당성에 대한 예산낭비신고

1. 제보 배경 및 목적

부산시는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부산형 대학원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29년 개교를 목표로 하며, 1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실질적인 효과와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예산 낭비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부당성이 우려됩니다. 이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자 공익제보를 진행합니다.

2. 주요 위법 및 부당 사유

사업 정체성의 모호성 및 타당성 부족

부산형 대학원대학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 운영 방안, 대상 인재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미래 첨단 산업 분야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추상적인 목표만 제시되었으며, 실질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제공할지에 대한 계획이 미비합니다.

시의회에서조차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예산 대비 효과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대한 공공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과도한 예산 투입 및 혈세 낭비

이 사업에는 1400억 원의 건설비와 100억 원의 초기 운영비 등 총 15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산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위험이 큼니다. 시립 대학원대학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인재들이 부산에 정착할지, 또는 지역 경제에 기여할지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이는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 제동과 전문가의 반대 의견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이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는 시의회 내부에서도 이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산지역 국립대 교수들 또한 이 계획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 추진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함을 나타냅니다.

부지 제공 및 기부채납의 법적 문제

신라대학교가 부산시에 3만 평의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으나, 이러한 부지 제공이 지역 대학의 존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부족합니다. 이는 사립대학의 공공재적 성격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며, 법적·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및 요청사항

부산형 대학원대학 설립 계획은 예산 낭비 및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큼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와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며,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본 사업의 중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4. 제보자의 기대 효과

본 공익제보를 통해 부산시가 추진하는 부산형 대학원대학 설립 계획이 철저히 검토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부산시가 보다 투명하고 신중한 재정 집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지산학협력과 답변]

- 가. 우리 시는 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을 통한 유망 기업 육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나. 현재까지 부산형 대학원대학 추진과 관련하여 소요 예산(규모), 설립 형태, 입지, 연구 분야 등 세부 추진 방향이 확정된 바 없으며,
- 다. 사업의 기초 구상안 마련과 다양한 의견수렴 등 사업 추진 및 방향에 대한 지역 구성원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현재 용역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 라. 향후, 타당성 분석 용역을 통해 여러 분야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추진 방향 등을 설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시니어클럽 예산낭비(2024. 8.)

예산낭비
신고내용

★★★★★로 시니어클럽에서 활동하시는분들이 10분정도 오시는데. 재활용 분리를 해놓은 패트병을 수거하러오십니다. ☉☉ 내에 미화분들이 계시고 정기적으로 청소업체가 와서 수거를 해가는데. 그거를 시니어클럽에서 10명이나 와서. 30개도 안되는 패트병을 들고가십니다. 7월까지 3분이 오셨는데 8월부터는 10명이 오시는데. 세금낭비가 너무 심한거 아닙니까! 저희부모님도 시니어클럽에서 일하시는데. 저희부모님은 유치원 청소를 막노동하듯이 힘들게 하시는데. 차별이 너무심한것같습니다. 이런제도는 없애던지. 불필요한곳에 억지로 인원을 넣지마세요

담당부서
처리결과

· [노인복지과 답변]
가. 귀하께서 말씀하신 패트병 수거 사업은 ‘우리동네 플라스틱 자원순환단’ 사업으로 2023년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전국 신규 노인일자리아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우리동네 ESG센터’와 연계된 사업으로 폐플라스틱 수거 및 재활용으로 자원 순환, 탄소중립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025년 확대 예정)
★★★★★와는 패트병 수거 관련 업무 협약을 통해 올해 7월까지 ▲▲시니어클럽에서 참여자를 배치하였고, 8월부터는 △△시니어클럽에서 참여자를 배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수행기관을 비롯한 전 구·군에 패트병 수거량 추이를 고려한 참여자 수 배치를 하도록 공문 발송하였습니다(첨부 참조)
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노인일자리 사업 동일 급여 대비 노동강도 차이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도 지침 개정 등 건의 요청이 있는 상황입니다. 귀하의 부모님께서 활동하시는 보육 시설 사업의 경우에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사업유형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공익활동으로 참여하시는 경우 타 환경개선 사업과 비교했을 때 근로 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귀하의 부모님께서 참여하시는 시니어클럽의 공익활동 중에서 업무 강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 내년도에는 해당 사업을 사회서비스형으로 전환하여 직무 강도에 맞는 처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 및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복지부에서도 공익활동 내 해당 사항을 인지하고 있어, 공익활동 내 유형 재편 및 일부 사업 사회서비스형 이관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부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

8. 예산낭비 신고(2024. 8.)

예산낭비
신고내용

- 1. 사건 개요**
부산광역시는 프랑스 퐁피두센터의 부산 분관 유치를 추진하면서 시의회에 허위 정보를 보고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부산시는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이 서울 분관 폐관 이후 독점적으로 운영될 것이라 주장하며,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시의회로부터 유치 양해각서(MOU)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퐁피두센터는 서울과 부산 두 분관이 동시에 운영될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2. 세금 낭비의 내용**
부산시는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유치와 관련하여 1081억 원의 건립비용(땅값 제외)과 연간 125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장료 수익은 연간 50억 원으로 추정되며, 매년 약 75억 원 이상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더불어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시의회 동의를 얻어 추진되는 이 사업은 부산 시민의 세금이 낭비될 우려가 큼니다.
- 3. 세금 낭비의 구체적 사유**
부산시가 허위 보고를 통해 시의회로부터 양해각서 동의안을 통과시켰다는 점.
연간 75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
부산시립미술관과 부산현대미술관 등 지역 내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 대신 외국 미술관 분관 유치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
- 4. 요청사항**
본 신고서는 부산광역시의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유치 과정에서의 허위 보고 및 세금 낭비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이에 따른 책임 규명을 요청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와 함께 공론화를 통해 부산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처리결과

- [문화예술과 답변]
가. 부산시는 퐁피두 센터 부산 관련 시의회 허위 보고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회의록에도 허위 보고에 대한 기록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세금 낭비의 가능성에 대하여는 사전에 연구 용역을 통하여 충분한 경제성, 타당성 검토를 받아 추진 중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 따른 건립비용이 1081억원, 연간 운영비가 125억원으로, 기존 부산시립미술관 ('24 예산 240억 *리모델링비 포함), 부산현대미술관의 운영비('24 예산 105억)와 비슷한 수준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 있어 우려하시는 세금 낭비가 없도록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 백양터널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예산낭비 신고(2024. 9.)

예산낭비
신고내용

- 신고 대상 사업
부산광역시에서 시행 예정인 백양터널 통행료 무료화 정책 (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 2031년 신백양터널 완공 시까지 한시적 무료화)
- 문제의 배경
부산시는 백양터널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무료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약 60억 원, 총 6년간 360억 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이 결정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예산 낭비의 이유
이 정책은 시민들의 세금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도한 재정부담
백양터널 통행료 무료화로 인해 매년 60억 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 금액은 6년간 총 360억 원에 달하며, 부산 시민들의 세금으로 총당될 예정입니다. 이는 매우 큰 금액으로, 다른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나 인프라 개선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 이용자 부담 원칙 무시
터널을 이용하는 특정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시민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현재 소형차 기준 통행료가 9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금액에 해당하며,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터널을 이용하지 않는 다수의 시민들이 이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것은 세금의 공평한 사용 원칙을 위배합니다.
- 단기적인 정책으로 인한 혼란
이 무료화는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에는 다시 유료화로 전환될 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 없이 일시적으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며, 시민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산낭비
신고내용

- 세금 낭비의 구체적 내용
매년 60억 원씩, 6년간 360억 원의 예산이 터널 관리와 운영에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금액은 터널을 이용하는 소수의 시민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공정한 세금 사용 원칙에 위배됩니다.
교통 혼잡 해소 및 도로 개선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부산시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 대안 제시
현재 소형차 기준 통행료 900원에서 45% 인하하는 안을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일부 줄이는 방안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방식은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공공 재정의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31년 신백양터널 완공 이후의 유료화 전환 계획에 대해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장기적인 교통 정책과 재정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결론
백양터널 통행료 무료화 정책은 부산시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동시에 세금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초래할 우려가 큼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같은 이유로 예산 낭비 신고를 접수합니다.

담당부서
처리결과

- 가.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종료 이후의 통행료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 사항으로 유료화와 무료화가 각각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유료화는 이용자 부담 원칙에 충실하게 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여 부산시 재정을 절감 할 수 있고 통행료 징수에 따른 통행량 증가 억제효과가 있으나, 25년간 계속 통행료를 납부해 온 도로 이용자들은 지속적으로 통행료 부담을 갖게 됩니다. 무료화의 경우는 이용자들의 통행료 부담은 없어 지지만 부산시 재정 손실과 무료통행으로 인한 통행량 증가가 우려됩니다.
- 나.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검토한 결과 최근 물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무료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03. 2025년 부산광역시 예산성과 우수사례

※ 일부발췌

1. 동천 해수도수시설 점·사용 허가조건 변경 협의를 통한 세출예산 절감

구분	주요내용
① 사업 개요	· 시 설 명 : 동천 수질개선을 위한 유지용수(해수) 취수시설 · 점용면적 : 1,089㎡(펌프장 841.9㎡, 관로부 247.1㎡) · 허가권자 : 해양수산부(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 용 역 명 : 동천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 위 치 : 부산시 동구 북항 해역 일원 · 용역기간 : 2017년부터 2023년 까지 매년 시행 · 사 업 비 : 매년 약 80백만원(2024년 절감 사업비 84백만원)
② 추진 경과	· '16. 12. :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승인(2016. 12. ~ 2021. 12.) · '17. ~ '20. : 해양환경영향조사 실시(공사중 1차년도 ~ 4차년도) · '20. 12. : 동천 생태하천복원(수질개선)사업(2차 관로) 준공 · '21. ~ '23. : 해양환경영향조사 실시(운영중 1차년도 ~ 3차년도) · '24. 3. : 허가조건 변경 협의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종결 처리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조건에 명시된 공사 완료 후 수저질 환경의 모니터링 및 해역영향 진단을 위하여 취수시설 설치 완료 후 2021년 ~ 2023년 3년간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실시 - 허가조건에 종결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매년 용역 예산 집행 · 수년간 시행한 조사 결과 동천 해수도수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모니터링 종결 요청 - 유사 사례가 거의 없는 해수도수 사업으로 인한 허가조건의 변경에 대해 허가권자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부정적 반응을 보임 · 수차례 유선 협의와 4차례에 걸친 방문 협의를 통해 용역 시행 대신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해양환경측정망 결과 제출로 모니터링(해역영향진단) 실시 계획 변경 최종 협의 완료
④ 성과사례 내용	· '24. 3. : 허가조건에 명시된 운영 시 북항해역에 대한 수저질 환경의 주기적 모니터링(해역영향진단) 수행 방법 변경 -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실시(당초) → 부산시 해양환경측정망 대체(변경) - 해수도수 점용허가 행정 목적을 유지하면서 장기적 예산절감 방안 마련
⑤ 예산성과 결과	· 2024년 85백만원 예산 성과(절감) - 동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비 83,868천원 · 2024년 1회 추경 시 감액 - 매년 약 80백만원, 향후 5년간 약 400백만원 예산 절감 가능 - 해수도수 시설을 존치하는 한 예산 절감 효과는 지속적



2. 부산추모공원 조성사업 대행사업비(선투자금) 절감

구분	주요내용																																	
①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부산추모공원 조성사업 · 규 모 : A=257,805㎡(봉안시설 122,798기, 주차장 등) · 사업기간 : 2004년 ~ 2010년 · 사 업 비 : 669억원(준공후 금융비용 제외) · 사업방식 : 「지방공기업법」 제7조에 따른 대행사업(부산도시공사)																																	
② 추진 경과	· '07. 1. : 부산추모공원 조성사업 착공 · '07. ~ '09. : 선투자금 상환(217.76억원)(市 → 公社) · '10. 2. : 부산추모공원 조성사업 준공 · '10. ~ '21. : 선투자금 상환(390억원)(市 → 公社) ▷ 매년 30억원 · '22. 2. : 선투자금 최종 정산을 위한 협조 요청(市 → 公社) · '22. 5. ~ '23. 9. : 대행사업비 정산(1~6차) 회의 ▷ 市 변호사 법률자문 · '24. 5. : 부산시 사전컨설팅감사 · '24. 8. : 대행사업비 최종 정산 합의(市 ↔ 公社)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 부산추모공원 조성을 위해 '04. 5월 부산도시공사와 체결한「추모 공원 조성사업 대행협약서」 제7조에 따르면, 도시공사가 사업비를 선투자하고, 봉안묘를 분양하여 충당하기로 하였으나, '09. 6월 분양률 저조(7%)로 市 재정으로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업비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채 매년 30억원씩 예산편성하여 14년간 선투자금 상환중이었음. - 분양가산정을 위해 포함된 간접비(일반관리비 등)는 실 사업비로 보기 어렵고, '대행수수료'와도 중복됨. - 실제 지출한 비용(직접비)에 대해서만 이자 적용함이 타당함. · '22. 2월 선투자금 추가 정산 요청(市→公事)을 시작으로 타 대행사업 비교를 통한 사업비 재검토, 관련 법령 검토, 변호사 자문, 관계기관 실무협의(6회), 사전컨설팅 감사 등을 통해 최종 사업비 정산 노력																																	
④ 성과사례 내용	· 2년 여간의 대행사업비 추가정산 검토 및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24.8월 부산추모공원 대행사업비 최종 정산 합의하여 도시공사 정산액 대비 51.2억원 감액하여, 자칫 연례반복적 업무 수행으로 낭비될 수 있었던 예산 절감 · 최종 사업비 정산내역<table><tr><th colspan="2">구 분</th><th>'24. 12. 31.기준</th><th>公社(안) 대비</th></tr><tr><td rowspan="6">총 사업비</td><td>총사업비 소계(A)</td><td>64,719,916</td><td>△ 2,188,174</td></tr><tr><td rowspan="3">직접비</td><td>용지비</td><td>11,669,170</td><td></td></tr><tr><td>조성비 및 부대비</td><td>46,511,475</td><td></td></tr><tr><td>직접인건비</td><td>1,769,855</td><td></td></tr><tr><td rowspan="2">간접비</td><td>준공전 금융비용</td><td>3,199,034</td><td></td></tr><tr><td>대행 수수료</td><td>1,570,382</td><td></td></tr><tr><td colspan="2">준공후 금융비용(B) *</td><td>(추정) 7,610,260</td><td>△ 2,934,933</td></tr><tr><td colspan="2">선투자금 총액(C=A+B)</td><td>(추정) 11,554,276</td><td>△ 5,123,107</td></tr></table>	구 분		'24. 12. 31.기준	公社(안) 대비	총 사업비	총사업비 소계(A)	64,719,916	△ 2,188,174	직접비	용지비	11,669,170		조성비 및 부대비	46,511,475		직접인건비	1,769,855		간접비	준공전 금융비용	3,199,034		대행 수수료	1,570,382		준공후 금융비용(B) *		(추정) 7,610,260	△ 2,934,933	선투자금 총액(C=A+B)		(추정) 11,554,276	△ 5,123,107
구 분		'24. 12. 31.기준	公社(안) 대비																															
총 사업비	총사업비 소계(A)	64,719,916	△ 2,188,174																															
	직접비	용지비	11,669,170																															
		조성비 및 부대비	46,511,475																															
		직접인건비	1,769,855																															
	간접비	준공전 금융비용	3,199,034																															
		대행 수수료	1,570,382																															
준공후 금융비용(B) *		(추정) 7,610,260	△ 2,934,933																															
선투자금 총액(C=A+B)		(추정) 11,554,276	△ 5,123,107																															
⑤ 예산성과 결과	· 총 5,123백만원 예산 성과(절감) - 사업비 재산정 : 669.1 → 647.2억원(감 21.9) - 준공 후 금융비용 재산정 : 105.5 → 76.2억원(감 29.3)																																	



3. 전국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유치에 따른 자주재원 확보

구분	주요내용
①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전국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유치 · 지정기관 : 행정안전부 · 지정기간 : 2025. 2. 1. ~ 2026. 1. 31. · 사업내용 : 매월 20일 세무서장과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25.3%(약 28조, 분기별 약 7조)를 지방소비세로 받아 분기별로 5일(총 20일)간 보관 후 각 시·도와 시·군·구 등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자주재원으로 확보하여 세입예산에 반영조치
② 추진 경과	· '24년 3 ~ 5월 행안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에 수시로 '25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유선 건의(8회) · '24년 5월 납입관리자 지정 건의를 위해 행안부 출장 · '24년 6월 행안부에서 전국 지방소득세 워크숍 부산 개최요청 · '24년 7월 우리시에서 납입관리자 지정을 요청하며,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담배소비세 전국 합동 워크숍 부산 개최 건의, 행안부 전국 합동 워크숍 부산 개최 결정(7. 31.) · '24년 9월 (행안부 전국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담배소비세 합동 워크숍 부산 개최) - 일시 : 2024. 9. 4. ~ 9. 6.(3일간) - 장소 : 센트럴호텔(해운대 소재) - 참석인원 : 100명 내외(전국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 소비세 담당자, 지방세연구원, 행정안전부 등) (행안부 지방소득세과장 등 참석자 스포원 방문 지원) - 일시 : 2024. 9. 4. - 장소 : 스포원 - 참석인원 : 10명 - 목적 : 행안부 현장시찰, 부산시 지원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관련 부산 간담회 개최) - 일시 : 2024. 9. 5. - 장소 : 해운대구 인근 식당 - 참석인원 : 20명(행정안전부, 부산시) · '24년 12월 부산시 지방소득소비세팀장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정 건의 부산시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제출 부산시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행안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3832호, '24. 12. 30.)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고시 행안부 고시 제2025-9호)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 고금리 시대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희망으로 과도한 경쟁 발생
- 납입관리자 지정시기가 다가오자 광주시, 대전시, 대구시, 인천시 등에서 납입관리자 유치 신청을 하여 치열한 경쟁 발생으로 유치 불투명
- 부산시 지방소득소비세팀장을 중심으로 열악한 재정상황 및 1인당 부가가치세액이 높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지속적인 지정 건의
- 행안부가 주최하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의 워크숍을 우리시가 통합 개최 하면서 납입관리자 지정유치 당위성을 강조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 경주
- 납입관리자로서의 역할 수행의 역량과 책임감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는 업무수행 계획서 제출
- 이러한 노력으로 '24. 12월 행안부로부터 부산시가 전국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됨.

④ 성과사례 내용

- 행안부로부터 '24. 12월 부산시가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되어 전국 지방소비세 납부금을 각 시·도와 시·군·구 등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총 119억원 확보
- ▷ '24. 12월 '25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되어 자주재원 이자수입 81억* 확보('25년 본예산 기반영)
- * 연간 28조(분기별 7조) × 2% / 365일 × 21일(연간 예치일수)
- ▷ 전국 지방소비세 납입금 취급 금융기관 공개경쟁 선정으로, 당초 적용 이자율(2%)보다 더 높은 2.29%를 최종 적용 이자율로 결정하여 이자수입 12억* 추가 확보('25년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예정)
- * 연간 28조(분기별 7조) × 2.29% / 365일 × 21일
- ▷ 긴 설연휴(6일)로 인한 업무인계인수 기간의 부족으로 국세청에 납입금 조기 납입을 요청한 결과, 2월분에 한해 6일 조기 납입 확정(예치기간 21일 → 27일)으로 이자수입 26억* 추가 확보('25년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예정)
- * 연간 28조(분기별 7조) × 2.29% / 365일 × 27일(연간 예치일수)

⑤ 예산성과 결과

- '25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유치로 이자수입 119억원 확보
- '25년 본예산 기반영 : 81억

※ 국세청에서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계좌로 2월분을 '25. 2. 14.에 우리시 납입관리자 계좌로 8조 2,553억 입금완료, 2. 14. ~ 2. 20.까지 11일간 이자수입 57억원 확보 → '25. 3. 17. 세입조치예정

- '25년 추가경정예산 시 세입 반영 예정 : 38억



4. 교육지원사업 이자발생액 정산 개선을 통한 수입증대

4. 교육지원사업 이자발생액 정산 개선을 통한 수입증대																				
구분	주요내용																			
① 사업 개요	· 지원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부산광역시 교육지원 조례 등 · 추진기간 : '23. 3. ~ · 사업내역 : 교육지원사업 무상급식비 등 4개 사업																			
② 추진 경과	· '23. 3. : 2022년도 교육지원사업 점검 및 평가계획 수립 · '23. 4. : 교육지원사업 정산서 제출(교육청 → 시) · '23. 5. ~ 6. : 정산방식 개선관련 교육청과 협의(유선, 회의개최 등) · '23. 6. : 2022년 정산결과 알림 및 2023년 정산개선 방법 알림 - 24년부터 이자발생액을 사업비 비율대로 정산하기로 알림 · '24. 6. : 무상급식비등 4개 사업 이자발생액 포함 정산 · '24. 12. : 2차추경 세입예산 편성 및 교육청 반납 조치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 교육청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세입과 세출이 1개의 계정으로 처리되고 있어 시의 교육지원사업비를 교육청 특별회계 1개 통장으로 전출하고 있으며 · 사업별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아 이자산정이 곤란하여 교육청에서는 이자발생액 미반납 · 법적근거와 타시도 사례, 정산기준(서식포함) 등을 마련하여 ☐ 정산 및 현장점검시 문제점에 대해 교육청에 개선건의를 통해 정산 관행 탈피 2024년 정산부터 이자발생액 반납키로 협의																			
④ 성과사례 내용	· 2024년 (2023년도 교육지원사업 대상) 정산시, 사업비 분담비율대로 이자발생액을 정산하여 세입 조치함 <table><tr><th>사업명</th><th>이자발생액(원)</th><th>비고</th></tr><tr><td>계</td><td>23,810,880</td><td></td></tr><tr><td>무상급식비</td><td>8,786,010</td><td></td></tr><tr><td>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비</td><td>497,760</td><td></td></tr><tr><td>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td><td>14,470,820</td><td></td></tr><tr><td>지방이양사무 지원</td><td>56,290</td><td></td></tr></table> · 매년 교육지원사업비가 늘어남에 따라 이자발생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사업명	이자발생액(원)	비고	계	23,810,880		무상급식비	8,786,010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비	497,760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	14,470,820		지방이양사무 지원	56,290	
사업명	이자발생액(원)	비고																		
계	23,810,880																			
무상급식비	8,786,010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비	497,760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	14,470,820																			
지방이양사무 지원	56,290																			
⑤ 예산성과 결과	· 매년 20백만원 수입증대 - 정산방법의 개선으로 인해 매년 이자발생액 세입 조치로 수입 증대 * 24년 (23백만원), 25년(정산 예정)																			

5. 전기 시내버스 연료비 인화로 표준운송원가 신뢰성 제고 및 준공영제 재정 3,139백만원 절감

5. 전기시내버스 연료비 인하로 표준운송원가 신뢰성 제고 및 준공영제 재정 3,139백만원 절감

구분	주요내용																																							
① 사업 개요	· 주요내용 - 전기 시내버스는 '16년 도입시작, '24. 12월 현재까지 686대 운영중 -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전기충전소는 대부분 시내버스업체에서 직접운영 또는 시내버스 업체가 별도 설립한 충전법인에서 운영 - 시는 준공영제 전기 시내버스 연료비를 지급함에 있어 현재 환경부가 고시하는 단가(347.2원/kwh)를 적용하는 것이 과대계상임을 버스업체 실태점검을 통해 밝혔음 - 이에 적정원가를 산출하기 위하여 버스조합 및 버스충전업체에 원가자료를 제출요구하였으나, 버스조합 등은 공문으로 부실한 자료 제출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간섭이라고 주장, 시와 조합, 업체간의 갈등 발생. - 시의 반복적 설득에 제출한 13개사를 기준으로 산출한 전기연료비 단가(273.01원/kwh)와 조합에서 제시한 민간충전사업자의 적정 전기연료비 단가(336.9원/kwh)를 기준으로 장기간 협의 · 결과 - 전기차 연료비 인하를 위한 조합과의 협상 결과, 충전업체의 인건비 절감 및 충전 원가 절감 노력 및 전기버스 대량 보급으로 인한 준공영제 재정절감 공헌을 인정하여, 부산시가 당초 산출한 전기연료비 단가를 일부 보정한 단가(295.35원/kwh)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이해당사자들이 합의하였고, 교통위원회에 해당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됨 * 타시(서울시, 대구시 등)는 시에서 전기충전시설에 대해 직접 설치 또는 설치를 위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부산시는 업체에서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에 부산시는 별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업체에서는 운영비 절감을 위해 노력함 * 버스보유대수 대비 전기버스 도입률 전국 1위(686/2,511대), 연료비 절감(연간 275억원)																																							
	전기버스 도입에 따른 성과 · 『CNG → 전기버스』 전환으로 연 275억원 재원절감 효과(2024. 12. 기준) [연료별 일일 대당 원가] <table><tr><th>경유</th><th>CNG</th><th>수소</th><th>전기</th></tr><tr><td>137천원</td><td>181천원</td><td>129천원</td><td>71천원</td></tr></table> ·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전기버스 보유율 <table><tr><th>구분</th><th>부산</th><th>서울</th><th>대구</th><th>인천</th><th>광주</th><th>대전</th><th>울산</th></tr><tr><td>면허대수</td><td>2,511대</td><td>7,381대</td><td>1,652대</td><td>2,224대</td><td>1,044대</td><td>1,020대</td><td>770대</td></tr><tr><td>전기버스</td><td>686대</td><td>1,172대</td><td>78대</td><td>236대</td><td>47대</td><td>92대</td><td>24대</td></tr><tr><td>도입율</td><td>27%</td><td>16%</td><td>5%</td><td>11%</td><td>5%</td><td>9%</td><td>3%</td></tr></table>	경유	CNG	수소	전기	137천원	181천원	129천원	71천원	구분	부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면허대수	2,511대	7,381대	1,652대	2,224대	1,044대	1,020대	770대	전기버스	686대	1,172대	78대	236대	47대	92대	24대	도입율	27%	16%	5%	11%	5%	9%
경유	CNG	수소	전기																																					
137천원	181천원	129천원	71천원																																					
구분	부산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면허대수	2,511대	7,381대	1,652대	2,224대	1,044대	1,020대	770대																																	
전기버스	686대	1,172대	78대	236대	47대	92대	24대																																	
도입율	27%	16%	5%	11%	5%	9%	3%																																	



① 사업 개요	- 향후 기후위기 대응 및 연료전환을 통한 준공영제 재정절감을 위해 전기버스 등 친환경 버스 도입이 절실함을 업계에 지속 설득하여, 업체의 전기버스 도입계획에 차질없도록 시에 적극 협조로 갈등 수습
② 추진 경과	· '24년 시내버스업체 운영실태 현장점검 계획 수립('24. 2. 26.) · 시내버스 업체 현장(본사 및 영업소) 방문('24. 7. 15. ~ 5. 15.) · 전기연료비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회신('24. 8. 8, '24. 8. 16 등) · 전기버스 연료비 관련 조치계획('24. 8. 23.) - 부산시 연료비 단가 제시 · 전기버스 적정 전기요금 산정(안)제출('24. 9. 2., 조합 → 시) · 표준운송원가(전기연료비)관련 감담회 개최 알림('24. 9. 25. 및 '24. 11. 26.) · 전기버스 연료비 자료 분석결과('24. 12. 3.) 및 전기연료비 자료분석 결과 통보('24. 12. 3.) : 부산시 분석 연료비 단가 · 전기연료비 관련 회의개최('24. 12. 13., '24. 12. 19.) · 2024년 제3회 부산광역시 교통혁신위원회 심의 · 의결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 타시(서울시, 대구시)는 전기충전소를 시에서 설치 또는 지원하는 형태로, 충전시설설치비용 까지 전기료에 포함하여 및 적정연료비를 산출하는 사례가 드물어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 애로 · 일부 충전업체는 시내버스업체와 별도 법인임을 강조, 원가제공 반대, 원가자료를 제공한 업체도 전기충전소 도입시기, 구축방식 등 운영상황이상이하하여 표준화된 원가 결정 어려움 ▶ 자료제출업체 · 시내버스업체 기준 13개사 ▶ 미제출업체 · 시내버스업체 기준 10개사 · 버스업체 및 충전업체는 전기차 도입으로 인한 시의 재정절감 및 친환경 교통수단의 신속한 도입과 규모확대를 추진하는 부산시 정책에 동참증임을 주장하며 전기단가 조정 등에 대해 반발, 전기버스 도입 거부 의사 표시로 친환경버스 도입추진에 차질 발생으로 협상 난항 · '24. 8. ~ 12.말까지 시와 업계 관계자 간 회의를 통해 전기연료비 단가 인하에 대한 논리적 근거 제시 등으로 버스업계 지속 설득하여 '24. 12. 20. 최종 협상 및 교통혁신위원회 심의 · 의결함으로써 시 재정지원금 절감

④ 성과사례 내용	· “시내버스업체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통해 전기버스 연료비 관련 문제점(환경부 고시단가의 전기연료비 과다지급 내포) 발견하여 버스조합 등에 연료비 단가 인하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 협상 - 부산시, 버스회사, 충전업체 및 조합 관계자가 참여하여 업체의 충전소 운영현황 및 표준화된 비용 (환수금액) 논의 - 부산시에 원가 자료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전기연료원가 분석하여 적정연료비 산출 · 버스업체등은 시중의 전기연료비 단가를 기준으로 336.9원/kwh를 주장하였으나, 부산시의 원가분석 결과를 근거로 '24. 12. 20. 타협안(295.35원)을 제시, 합의 및 교통혁신위원회 심의 의결 · 또한 향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기버스 등 친환경버스 도입이 절실함을 업계에 지속 설득하여, 업체의 전기버스 도입 거부 철회 및 도입계획에 차질없도록 시에 적극 협조 약속으로 갈등수습 · 타시도는 충전소에 대한 별도 예산마련과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는데 반하여 부산시는 업체에서 충전소 설치 및 운영하게 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중적인 예산낭비를 막음
⑤ 예산성과 결과	· 예산절감 : 총 3,139백만원 절감(준공영제 예산) · <산출근거> - (기존) 전기연료비 단가 : 347.2원/kwh → (변경) 전기연료비 단가 : 295.35/kwh - 전기버스 : 686대, 1일 대당 연료사용량 332.5kwh - 절감액 : $(347.2\text{원}/\text{kwh} - 295.35/\text{kwh}) \times 241.8\text{kwh}/\text{일,대} \times 365\text{일} \times 686\text{대}$ = 3,139백만원 · ※ 추후 전기버스 도입 증대 시 연감 절감효과는 확대됨



6. “행위허가” 추진으로 “산불진화 헬기계류장 조성” 사업비 절감	
구분	주요내용
① 사업 개요	· 건 명 : 산불진화 헬기계류장 조성 · 위 치 : 금정구 회동동 28-60일원 · 추진기간 : 2024년 · 사 업 비 : 당초 24.9억원 ㉠ 집행 2.5억원 (절감 22.4억원) · 내 용 - '24년 산불진화 헬기계류장 조성비 총 24.9억중 22.4억(용역비, 공사비) 절감함 - 관련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재검토 및 협의 재추진하여 “행위허가(방재시설)”로 허가 후 헬기계류장 조성완료함 - 행위허가 추진하여 22.4억(용역비 0.9억, 공사비 21.5억) 절감
② 추진 경과	· '22. 2. :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계류장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 '23. 3. : 헬기계류장 조성 의견 협의, 도시계획시설(공항) 결정 후 추진 통보(부산시 ↔ 금정구) · '23. 8. ~ 9. : 헬기계류장 조성 의견 재협의, 도시계획시설(공항) 결정 후 추진 통보 (부산시 ↔ 금정구) · '23. 9. : 산불진화 헬기계류장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시장) · '24. 3. : 산불진화 헬기계류장 조성사업 공유재산심의회 심사 완료 · '24. 2. ~ 4. : “행위허가(방재시설)” 신청 전 담당부서와 사전검토 및 보완·협의 · '24. 5. :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상 “행위허가(방재시설)” 신청 및 허가 득 · '24. 6. ~ 11. : 조성공사 착공 및 완료 ('25. 1. 행위허가 준공 승인)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 당초(2023년) 관할구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와 최초협의 시 산불진화헬기계류장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공항)결정” 후 사업시행 통보되었고 '23년 12월 사업비 2.5억(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 '24년 본예산에 용역비 0.9억원 확보됨 - “도시계획시설(공항) 결정” 추진 시 중앙부처 협의에 따른 장기간 소요 및 협의의 불확실성, 예산 낭비 등 여러 장애 및 위험요인 발생함 - 사업검토 중 “행위허가(방재시설, 산불방화시설)” 득하여 추진 시 “도시계획시설(공항)결정” 절차 없이 사업추진 검토 착안 - 지속적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 연락 · 방문하여 설득 · 이해를 위한 노력 시도하여 “행위허가(방재 시설)로 허가를 득하고 - '24년 11월 산불방화시설 조성 완료(특교세 2.5억 활용) - '24년 12월 용역 예산 확보분(0.9억) 삭감(추경) 및 공사비 소요분(21.5억) 절감함

④ 성과사례 내용	· 관련 법령 내 사업시행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연구 · 검토하여 사업 허가 득하고 사업시행 완료 및 관련 용역예산 절감(삭감) - 당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내 도시계획시설(공항)결정 후 사업시행 통보 되었으나 - 사업추진의 장기간, 사업추진에 대한 불확실성, 예산낭비 등의 여러 요인 극복을 위하여 법령검토 및 담당부서와 지속적 소통 - 상기 특별조치법 내 타 조항 인 방재시설(산불방화시설)로 행위허가 신청하여 사업추진 및 적용 가능함을 검토함 - 지속적으로 허가 담당부서 방문 및 설득하여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방재시설) 득한 후 행안부 특별교부세(2.5억)활용 “방재시설(산불방화시설)”조성함
⑤ 예산성과 결과	· 산불진화 헬기계류장 조성 총 사업비 24.9억 중 22.4억 절감 · “산불진화헬기 계류장 조성” 도시계획시설(공항)결정 용역비 절감 : 총 0.9억원 · “산불진화헬기 계류장 조성” 도시계획시설(공항) 공사비 절감 : 총 21.5억원



7. 부산시 최초, 지중화 사업 및 지장물 이설 관련 부가가치세 21.7억 원 환급

구분	주요내용												
① 사업 개요	· 점검기간 : 2024. 11. 4.(월) ~ 11. 22.(금) ▷ 15일간 · 점검범위 : 2020년 이후 공익사업 지장물 이설비 집행내역 등 전반 · 점검대상 : 市 건설본부 · 상수도사업본부,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16개 구 · 군 · 점 검 반 : 재정지원감사팀												
② 추진 경과	· '24. 10. 16. : 공익사업 부가가치세 집행실태 특정감사 계획수립 · '24. 11. 4. ~ 11. 22. : 점검(감사) 실시 · '25. 2. 3. : 부가가치세 환급 조치 요구(18개 기관 대상) · '25. 2. ~ : 부가가치 환급 조치 이행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 (장애) 한국전력공사 등 과세 관행 유지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 - 지중화 사업 분담금과 공익사업 이설비용이 비과세 대상임에도 한국전력공사 등 사업 수행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 점검 기간, 국세청 해석 사례 등에 근거하여 비과세 요청함에도 한국전력공사는 자체 방침(비과세 업무기준) 근거로 비과세 및 환급 조치 거부 견해를 표명하는 등 실태 점검의 큰 장애물로 작용하였음 - 즉, 환급 조치 및 관행 개선 실현은 한국전력공사 자체 방침(비과세 업무기준) 반박을 통한 관행 탈피 유도가 우선 필요하였음 · (극복) 과세 관행 개선을 위한 발로 뛰는 노력 - ‘자체 방침(비과세 업무기준)’ 반박 자료를 대법원 판례, 서울시 사례 등 객관적 · 구체적인 자료로 추가 보완 · 정리하였음 - 검토자료를 토대로 한국전력공사 본사 등 대상 비과세 당위성을 직접 설명, 설득하여 적극적인 환급 조치 이행 협조를 이끌어 내었음 - 검토자료와 환급 실태 공유 등을 통해 구군 등 환급 이행 기관의 부담감을 최소화하는 등 역지사지 및 공생 정신으로 업무에 임하였음												
④ 성과사례 내용	· 부산시 최초, 지중화 사업 및 공익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실현 - 지중화 사업 및 공익사업 지장물 이설 관련 부가가치세 집행실태 전수 점검 - 18개 기관 대상, 부적정 집행된 부가가치세 환급 조치 및 과다 집행 관행 개선 - 사업비 약 21억 7천8백만 원(총 246건, 시비 약 5억 6천9백만 원 포함) 절약 - 예정 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절약(사업비 총액의 10%)으로 사업비 절약 효과 극대화												
⑤ 예산성과 결과	· 전수조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지출 절약 : 약 21억 7천만 원 <table><tr><th>상세</th><th>총액</th><th>국비</th><th>시비</th><th>구비</th><th>기타</th></tr><tr><td>환급액(원)</td><td>2,178,439,227</td><td>150,548,990</td><td>569,417,650</td><td>1,440,481,500</td><td>17,991,087</td></tr></table>	상세	총액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환급액(원)	2,178,439,227	150,548,990	569,417,650	1,440,481,500	17,991,087
상세	총액	국비	시비	구비	기타								
환급액(원)	2,178,439,227	150,548,990	569,417,650	1,440,481,500	17,991,087								

8. 전국 최초 자활기금 신규 조성재원 발굴로 영구적 시 기금 증식(전국적 기여)

구분	주요내용				
① 사업 개요	· 전국 최초 자활기금 신규 조성재원 발굴 및 전국 시 · 도에 파급효과 - 추진기간 : '23. 6월 ~ (계속) - 추진목표 : 자활기금 신규 조성재원 발굴로 연 7억 이상 수입 증대 - 추진내용 : 신규 조성재원 발굴 방안 마련, 제도개선 등 - 수입증대 : 707백만원				
② 추진 경과	· '23. 6. ~ 신규 조성재원 발굴 방안 마련 및 특 · 광역시 적립 현황 파악, 복지부 건의 · '23. 8. 적립 현황, 문제점, 개선 요청사항 등 공유(유선) ▷ 시 → 복지부 · '23. 8. ~ 적립비율 조정 및 지침 개정 의견 제출 등 건의 ▷ 시 → 복지부 · '23. 9. 지침개정 의견 “수용” 및 '24년 지침 개정 시 반영 통보 ▷ 복지부 → 시 · '23. 10. ~ 적립비율 조정 관련 16개 구 · 군 담당자 의견 조회 등 · '24. 1. ~ 지침 반영(복지부) 및 적립비율 조정 적용(17개 시 · 도 및 구 · 군) · '24. 2. ~ 18개 지역자활센터 월별 자활기금 적립내역 등 제출 → 월 1회 정산 및 모니터링 실시등으로 수입 증대 최대화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 자활기금 운용 이래 수십년동안 지속된 적립비율에 대한 개선 요청건으로 보건복지부와 시의 이해관계 상충으로 협의점 도달 애로 - 문제점 분석 후 적용 논리 개발하여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적극 건의 등 노력을 통해 적립비율 조정 협의완료(신규 조성재원 첫 발굴) · 개선된 적립비율 적용 시행 초기 반납금 정산 애로 - 월 1회 모니터링 및 정산 체계 구축으로 현장 소통, 지원 강화				
④ 성과사례 내용	· [전국 최초] 자활기금 신규 조성재원 발굴 → 매년 7억 이상 영구적 수입 증대 · 자활근로사업 매출액 반납금의 70% 시 자활기금에 적립('24. 1월 ~) 및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 시 반영되어 전국 17개 시 · 도 기금 증식에 기여 · 자활기금 적립 현황 및 문제점 등 분석을 통해 기금 신규 조성재원 발굴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사업 매출액 반납금 적립비율 조정) 및 지침 개정을 적극 건의해 모두 반영되어 자활사업 매출액 반납금의 70%를 시 자활기금으로 모두 적립('24. 1월 ~) * 전년대비 기금 수입 3배 이상 증가 → 향후 10년간 100억 이상 시 기금 수입 증대 예상 → 전국 최초 자활기금 신규 조성재원 발굴 모범사례로, 전국 17개 시 · 도에 파급효과 <table border="1"> <thead> <tr> <th>종전(Before)</th><th>개선(After)</th></tr> </thead> <tbody> <tr> <td>(중앙)펀드 : 구 · 군 자활기금에 7 : 3 비율로 적립</td><td>시 자활기금 : 구 자활기금에 7:3 비율로 적립</td></tr> </tbody> </table>	종전(Before)	개선(After)	(중앙)펀드 : 구 · 군 자활기금에 7 : 3 비율로 적립	시 자활기금 : 구 자활기금에 7:3 비율로 적립
종전(Before)	개선(After)				
(중앙)펀드 : 구 · 군 자활기금에 7 : 3 비율로 적립	시 자활기금 : 구 자활기금에 7:3 비율로 적립				

④ 성과사례 내용	· 개정된 지침 시행일이 '24. 2. 14.부터였으나 기금 수입 증대 최대화를 위해 '24. 1. 1.부터 개선된 적립비율 적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고, 지자체 상황에 따라 결정토록 답변 받아 부산은 1월 적립분부터 적용 · '24. 1월부터 18개 지역자활센터 반납내역에 대해 월 1회 정산 및 모니터링 실시하여 지침 통보 전 중앙편드로 기적립된 반납금을 환급받아 시 자활기금에 모두 적립하였으며, 센터에서 착오 정산된 반납금에 대해서 월별 확인 후 재정산 처리하는 등 체계적 업무처리 절차 마련·실행 노력으로 약 9천만원 추가 적립
⑤ 예산성과 결과	· '24년 707백만원 시 자활기금 수입 증대 - 제도개선으로 수입 증대 성과 영구적 지속(향후 10년간 100억 이상)

chapter 04.

참고자료

-
01. 예산낭비 신고 관련 서식
02. 관련법령





01. 예산낭비 신고 관련 서식

▶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명 칭)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 화	이 동 전 화	
	전 자 메 일			
신청기관명				
신 청 구 분	☐ 예산낭비신고 ☐ 예산절감제안			
답 변 방 법	☐ 우편 ☐ 전자메일 ☐ SMS			
※ 육하원칙에 따른 구체적 내용 기입 				
신고 등 내용				
20 . . 신청자 (인)				

*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 예산낭비신고 처리 결과서

예산낭비신고 처리 결과			
□ 신고정보			
신고자		전화번호	
E-Mail		휴 대 폰	000-0000-0000
접 수	2025. 00. 00.		
주 소			
□ 담당부서 현황			
담당부서		관련업무명	
담당자		전화번호	
□ 신고내용			
신고제목			
내용(요약)			
□ 내용검토 (※ 사업일 경우)			
사업명			
사업내용			
재원구분	국비 00백만원, 지방비(00백만원(시도), 00백만원(시군구)), 기타 00백만원		
검토판단			
□ 자료보완 요청 (※ 보완 필요한 경우)			
요청내용			
□ 현장확인 및 점검사항 (※ 현장확인 필요한 경우)			
위 치			
현 황			
점검의견			
현장사진	필요시 별도 파일로 첨부 가능		



□ 신고처리(답변)

관련법령	
예산낭비구분	☐ 예산낭비신고 ☐ 예산절감제안
검토결과	1) 예산낭비신고일 경우 아래에서 선택 ☐ 타당한신고 ☐ 타당하지않은신고 ☐ 무관한신고 추진하는 것이 상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하더라도 신고내용이 객관적으로 이유가 있을 경우는 타당한 신고로 분류 2) 예산절감제안일 경우 아래에서 선택 ☐ 채택 ☐ 일부채택 ☐ 불채택
종결처리	☐ 신고인 불명 ☐ 신고요지 불명 ☐ 단순의견 개선 ☐ 동일신고 기처리 ☐ 신고취하/착수 전 해결 ※ 예산낭비신고 중 무관한 신고일 경우와 예산절감제안 중 불채택의 경우에만 작성
유형분류	예산낭비신고 중 타당한신고와 타당하지않은 신고일 경우에만 작성 아래 열거된 항목중에서 선택 ☐ 사업타당성 검토 미비 ☐ 중복 또는 과잉 투자 ☐ 계약 및 공사관리 과오 ☐ 예산의 목적외 사용 및 불요불급한 집행 ☐ 기금 관리 과오 ☐ 국고보조금 및 출연금 관리 과오 ☐ 선심성/과시성 행사 ☐ 불합리한 제도 ☐ 국/공유재산 등의 소극적 관리로 인한 ☐ 기타 수입증대 기회 상실 ☐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 및 부정
처리결과 및 향후대책 (신고인 확인 항목)	신고인에게 답변으로 통보되는 내용



▶ 예산낭비신고 현장확인보고서

예산낭비신고 현장확인보고서			본인서명
신고명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확인일시			
현장위치			
확인내용			



현장사진

02. 관련법령

법령 1.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14-01-01 조례 제4970호]
[일부개정 2018-07-11 조례 제577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3.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례
 4.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제2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부산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시행한다.

제4조(공개방법)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고,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센터 설치·운영)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 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

- 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및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 ① 시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예산낭비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③ 감시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감시단의 구성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공개 모집의 방식으로 선발한다.
- ④ 시장은 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으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단원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⑥ 현장조사 등 감시단의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 7. 11.]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1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25. 1. 7.] [대통령령 제35186호, 2025. 1. 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044-205-3733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44-205-3707

제3장 예산

제54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본조신설 2011. 9. 6.]

부칙 <제35186호, 2025. 1.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3.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9. 11.] [행정안전부훈령 제161호, 2020. 9. 1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44-205-37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제도 운영 및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54조의3에 따른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이라 함은 법 제48조의2제1항부터 제2항까지 및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주민의 시정요구,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말한다.
2. "포털시스템"이라 함은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내의 "지방예산낭비신고"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신고자"라 함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제2장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신청 및 접수

제4조(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모바일 앱, 우편, 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접수)

- ① 신고센터에서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때에는 순서에 따라 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신고센터는 신고자가 서로 다른 두 건 이상의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동시에 신청한 때에는 이를 지방예산낭비신고별로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분할 접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접수번호는 포털시스템의 체계에 따라 부여한다.

제6조(처리기관 미지정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

문서, 이메일 등을 통하여 들어온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이 처리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기관에서 접수하여 처리한다.

제7조(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재분류 등의 절차)

- ① 신고센터는 신청받은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이 다른 기관에 관한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포털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관의 신고센터로 재분류할 수 있다.
- ② 신고센터는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타 기관으로 재분류한 경우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재분류 심사)

제7조제1항에 따라 포털시스템 상의 재분류를 세 번 이상 거친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은 행정안전부 신고센터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한다.

제3장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처리

제9조(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처리절차)

- ①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장"이라 한다)은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면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처리담당자는 신고내용 검토, 담당부서 협의, 관련기관 의견 청취,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③ 처리담당자는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결과를 포털시스템 별지 제3호 서식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서에 기입하여야 한다.
- ④ 처리담당자는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면서 예산낭비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 ⑤ 처리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발굴한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하여 관련부처 등과 협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자료보완 요구)

- ① 신고센터는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54조의2 제2항에 따라 15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자료보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5일 내의 기간을 추가로 지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료보완을 30일 내로 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 ④ 신고센터는 자료보완을 요구할 때는 별지 제4호 서식 자료보완요구서에 따라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으로 하여야 한다.
- ⑤ 신고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지방예산낭비신고 건을 종결 처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신고자가 두 번에 걸쳐 보완을 하지 아니하여 제5항에 따라 종결 처리한 때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기한)

- ① 신고센터는 시행령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다.
-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요구 처리가 곤란한 경우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때 신고자에게 연장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병합처리)

신고센터는 진행 중인 두 건 이상의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이 동일한 내용일 경우 이를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 통지)

신고센터는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가 종결되면 처리결과를 포털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신고자에 대한 처리결과와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문서, 이메일을 통하여 별도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종결처리)

신고센터는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처리하기 전에 취하한 경우
2. 신고자나 신고요지가 불명확한 경우
3. 행정안전부나 다른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이미 종결 처리된 것으로서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4. 동일한 내용에 대해 감사·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그 처분 및 재판결과와 형 집행의 당부에 관한 경우

제15조(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사후관리)

신고센터는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가 종결된 후 포털시스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후관리 현황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6조(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증거자료 미반환)

신고센터에 제출된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에 관한 증거자료는 신고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본 확인을 위해 제출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의2(지방예산낭비사례 등 공개)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예산낭비신고 등 중에서 예산절감 및 조치결과 등에 대한 사례를 모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사례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또는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제17조(행정안전부 신고센터의 구성원)

- ① 행정안전부 신고센터의 구성원은 30명 이내로 한다.
- ② 행정안전부 신고센터장은 지방예산낭비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으로 한다.
- ③ 행정안전부에는 신고센터장 외에 소속공무원 중 1명 이상을 접수 및 처리관리자로 둘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 신고센터에는 민간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기능)

- ① 행정안전부 신고센터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민원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류하고 민원 처리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 신고센터는 신고 사항을 조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위법·부당한 사항 발견 시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부서를 통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 신고센터는 예산낭비 사례가 빈번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우수한 지방예산낭비신고자 또는 신고센터의 운영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금지급을 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보수 등)

- ① 제19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신고센터에 파견된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급여 지급규정에 따른다.
- ② 민간전문위원에게는 적절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민간전문위원이 예산낭비신고 등과 관련하여 현장점검을 하는 경우 여비와 숙박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행정안전부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예산낭비 신고자 중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을 선정하여 제22조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포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예산낭비신고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같은 내용으로 「국민제안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 등을 지급받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되어 포상금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신고 등급이 1등급인 경우 1,000만원 이하
 - 2. 신고 등급이 2등급인 경우 700만원 이하
 - 3. 신고 등급이 3등급인 경우 500만원 이하
 - 4. 신고 등급이 4등급인 경우 300만원 이하
 - 5. 신고 등급이 5등급인 경우 100만원 이하
 - 6. 신고 등급이 6등급인 경우 50만원 이하
 - 7. 신고 등급이 7등급인 경우 20만원 이하
- ③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 반기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22조(행정안전부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포상금 지급심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포상금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2명
2. 지방재정의 수입 및 집행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수당 등 포상금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예에 따른다.
- ④ 포상금심사위원회는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해 신고의 난이도, 신고의 완성도, 신고의 합리성,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효과,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고 등급을 결정한 후 당해 신고자에게 각 등급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으로서 새로운 명백한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
 2. 사실관계나 예산낭비절감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3. 신고내용이 현재 관련 기관에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거나 이미 조치한 경우
 4. 감사원, 국회,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된 예산낭비사례와 동일한 사례를 신고하는 경우
 5. 관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하는 경우
 6. 기타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포상금심사위원회는 매 반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장은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한 자는 신고자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

제24조(목적과 기능)

주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두며, 「예산 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3.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5조(구성과 임기)

- ① 행정안전부에 두는 감시단은 300명 이내로 구성하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 ②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26조(위촉과 해촉)

- ① 주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자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발·위촉한다.
- ② 단원 중 제24조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제27조(권리와 의무)

단원은 주민의 의견을 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24조에 따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등)

감시단 회의에 출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61호, 2020. 9. 1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